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등을 위탁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공공측량 시행자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준수를 지원하고자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 이행절차 등을 안내하고 규격공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기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측량을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대상측량 :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종류*

* 공공기준점측량, 지형측량(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 등), 건설공사 응용측량(노선측량, 하천측량, 지하시설물측량 등) 공간정보구축(3차원 공간정보 등)

귀 기관의 “다동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기하니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측량 관련 사업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대한 의견

측량시행자	서울특별시
사업명	다동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공측량 관련 의견제시 항목	구매규격 반영여부	관련 법령
1.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미준수	「공간정보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2. 심사결과 오류사항 수정 제출	미준수	「공간정보관리법」 제18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구매규격 미반영 항목('미준수'표시)에 대해 붙임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구매규격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법령 근거 및 반영예시

제시 의견	1.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해당 여부	해당 / 해당없음
법령 근거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과업 반영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시 의견	2. 심사결과 오류사항의 수정 제출
해당 여부	해당 / 해당없음
법령 근거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④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성과심사결과서 작성 및 통지) ②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서에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측량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즉시 수정하여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과업 반영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